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담당
발 신 이수정 대변
안진걸 고발 실무;
제 목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서울지역 노동자 기자회견
날 짜 2011. 8.17(수) (두 종류의 고발장 포함 총 16장)

보 도 협 조 요 청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법 위반 추가 고발,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명백한 거짓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고발
- 오세훈 시장, 잇따른 투표참가독려 1인 시위는 명백히 불법
-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무상급식하면 3조 낭비'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 대상이 되는 서울시 초·중학교 학생 전체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실제 4천억 수준임에도 고의로 왜곡해

*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수)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에서 김종민 공동대표, 이수정 대변인 등 고발장 제출 전 약속 기자회견 예정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1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세훈 시장을 위한, 오세훈 시장에 의한, 오세훈의 r관계투표, 불법투표, 혈세낭비 나쁜 투표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3. 그럼에도 182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며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차별 급식, 아이들 편 가르는 나쁜 급식 정책에 대한 무리한 관제·불법투표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냉소와 거부 여론이 높아지자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투표참가운동본부라는 급조한 단체 등이 다급했는지, 불법적인 공무원 선거개입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고 주민투표 관련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오세훈 시장의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오늘(8/17)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시장, 한나라당,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두 종류의 고발장 별첨함. 고발 실무자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고발대리인 이광철 변호사) 끝.

고 발 장

- 고 발 인 1. 이 상 께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2. 이 수 께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3. 배 옥 께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담당변호사 이광철

피고발인 오 세 훈(서울특별시장)
 피고발인의 주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고발인 이상수, 이수호, 배옥병은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피고발인 오세훈은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는 8. 24. 서울시에서 치루어질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이하 이 사건 주민투표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투표운동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2. 경위사실

가. 이 사건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사실

이 사건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사실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1. 10. 피고발인 오세훈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서울시 의회에 제안하였으나, 서울시 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주민서명을 통해서라도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
- 2011. 1. 18. 서울시,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
- 2011. 2. 9.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안건을 가결하고, 이날 서울시보에 공시를 한 이후, 주민투표 절차(대표자 선정 이후 서울시민 5%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고 있음)를 진행
- 2011. 6. 16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접수
- 2011. 6. 20 주민투표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2011. 6. 27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준) 발족 (이하 무서운 시민행동으로 약칭)
- 2011. 7. 01 무서운 시민행동 1차 집행위
- 2011. 7. 04 주민투표 시민검증단 기자회견
- 2011. 7. 05 논평발표 : 절차적·도덕적 문제 드러낸 주민투표 무효
- 2011. 7. 07 한강르네상스 불법특혜 처벌을 위한 오세훈 시장 검찰고발 기자회견
- 2011. 7. 07 무서운 시민행동 2차 집행위
- 2011. 7. 11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결과 발표 기자회견(약 14만 건의 허위·대리 서명 발견)
- 2011. 7. 13 주민투표 서명 '명의도용' 고소·고발
- 2011. 7. 15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무서운 시민행동 3차 집행위
- 2011. 7. 19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 2011. 7. 20 주민투표 대응 논의 및 조직구성을 위한 야당, 풀뿌리시민사회 1차 전체회

의

2011. 7. 25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 수리/ 야당, 풀뿌리시민사회 2차 전체회의

2011. 7. 28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을 위한 풀뿌리시민사회·야당·지역단체 비상대책회

의

2011. 8. 01 주민투표발의

2011. 8. 01 무상급식 주민투표 규탄 및 투표거부 시민운동 돌입 선포

2011. 8. 03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규탄 각계 원로 선언 기자회견

2011. 8. 04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나.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결성 및 발족

1) 피고발인 오세훈은 서울시민과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대속에서 지난 8. 1. 이 사건 주민투표를 기어이 발의하였고, 이에 따라 오는 8. 24. 이 사건 주민투표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 주민투표는 다음의 네 가지 점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지난 1. 18.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80만여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가운데 14만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불법적인 것입니다.

3)이 사건 주민투표의 문안도 잘 못 결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1.8.1. 서울특별시시장(피고발인 오세훈)의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공고하면서 주민투표 문안을 제1안인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안과 제2안인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안 등 2개 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1안을 서울특별시 안이라 주장하지만 서울특별시장(피고발인 오세훈)은 원래 소득 하위 30%의 학생에 대한 지원만을 주장했을 뿐, 단 한 번도 소득하위 50%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즉, 원래 자기 정책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이라는 2안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정책을 수정했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정책을 투표 문안으로 놓고 투표하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4) 이에 따라 이러한 위법하고 잘못된 이 사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지난 8. 4. 발족식을 갖고, 이 사건 주민투표 반대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5) 반대운동의 골자는 이 사건 주민투표가 앞서 본바와 같이 주민투표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발인 오세훈의 대통령 선거전략의 일환에서 기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주민투표는 아예 개표가 되지 못하도록 투표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이 총 유권자 수의 1/3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1) 피고발인 오세훈의 이 사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과 태도

- 8. 5. 피고발인 오세훈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악포럼’ 초청 특강에서 현재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는 야권을 향해 “패배를 자인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 이어 피고발인 오세훈은 “야당과 진보 진영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붙어서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데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불참 전략을 쓴다고 공언한 것은 의외”라며, “무슨 전쟁이든 이겨야 한다”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당일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중 제1호 문화일보 2011. 8. 6.자 보도문출력물).
- 이러한 발언은 비단 문화일보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에서 비중있게 소개되었습니다.

- 그리고 피고발인 오세훈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건 주민투표의 1안이 자신의 안이라고 밝혔습니다(중제2호 주간동아 2011.8.8.자 “무상급식 주민투표 미래 한국 운명 가른다”). 이 이외에도 물론 피고발인 오세훈은 여러 차례 언론에 ‘자신은 1안을 지지한다’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흔히 이 사건 주민투표의 1안을 ‘오세훈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오세훈의 이 사건 1인 시위 행위의 위법성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오세훈은 이미 1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이 사건 주민투표의 문안상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주민투표의 경우 2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졌거나 혹은 1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건 주민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2011.8.16.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개의 안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는 경우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에 문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1안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고발인 오세훈이 속한 한나라당의 경우 8월 24일 주민투표를 ‘단계적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날’로 정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내부를 향해 투표 독려활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하는 지구당은 패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중 제3호 2011.8.16.자 뉴시스 기사, 여야,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 치열한 '선거전').
- 피고발인 오세훈 역시 자신의 대선불출마라는 정치적-이 사건 주민투표와 연결성을 찾아 볼 수 없는-선언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피고발인 오세훈의 이 사건 주민투표 참가 독려행위는 1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오세훈은 2011.8.15.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에서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또 8월 17일 서울시청 부근 국가인권위 앞, 을지로 등지에서도 또 투표일을 알리면서 사실상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해, 공무원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피켓트 오세훈 시장

기사등록 일시 [2011-08-15 16:49:56] <참조> 뉴시스

3. 피고발인의 위 발언의 형사책임 검토

가. 주민투표법 조항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 ① 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나. 이 사안의 경우

- 주민투표법은 "투표운동"의 정의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 그러면서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3호).
- 나아가 동법 제28조에서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제4호),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제5호) 또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발인의 경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주민투표의 참여

를 독려함으로써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즉, 주민투표법상의 투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제30조 제3호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피고발인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로써 동법 제28조 제5호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의 주민투표법 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자, 이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오니,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약 고발이 보충조사가 필요할 경우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치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실무자인 안진걸(연락처:)이 출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 | | |
|-----------|--------------------------|
| 1. 증 제1호증 | 문화일보 2011. 8. 6.자 보도문출력물 |
| 1. 증 제2호증 | 주간동아 2011.8.8.자 보도출력물 |
| 1. 증 제3호증 | 뉴시스 2011.8.16.자 보도출력문 |

첨 부 자 료

- | | |
|-----------|------|
| 1. 위 증거자료 | 각 1통 |
| 1. 위임장 | 1통 |

2011. 8. .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

고 발 장

- 고 발 인 1. 이 상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서울 중랑구 면목7동 두산아파트 201동180호
2. 이 수 호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3. 배 옥 병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담당변호사 이광철

- 피고발인 1. 투표참가운동본부(복지포폴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509호
2. 김춘규
피고발인1의 총괄상임본부장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509호
3.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여의도동 한양빌딩
4.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여의도동 한양빌딩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주민투표법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고발인 이상수, 이수호, 배옥병은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피고발인1은 선거관리위원회가 8. 24. 서울시에서 치루어질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이하 이 사건 주민투표라고만 합니다)1안(아래에서 설명됩니다)에 대한 찬청측 대표단체로 선정한 단체이며, 피고발인2는 피고발인1의 상임총괄본부장, 피고발인인3은 1안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현재 여당이고, 피고발인4는 피고발인3의 대표인자입니다.

2. 경위사실

가. 이 사건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사실

이 사건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사실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1. 10. 서울특별시 오세훈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서울시 의회에 제안하였으나, 서울시 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주민서명을 통해 서라도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
- 2011. 1. 18. 서울시,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
- 2011. 2. 9.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안건을 가결하고, 이날 서울시보에 공시를 한 이후, 주민투표 절차(대표자 선정 이후 서울시민 5%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고 있음)를 진행
- 2011. 6. 16 '복지포폴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접수
- 2011. 6. 20 주민투표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2011. 6. 27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준) 발족 (이하 무서운 시민행동으로 약칭)

2011. 7. 01 무서운 시민행동 1차 집행위
 2011. 7. 04 주민투표 시민검증단 기자회견
 2011. 7. 05 논평발표 : 절차적·도덕적 문제 드러낸 주민투표 무효
 2011. 7. 07 한강르네상스 불법특혜 처벌을 위한 오세훈 시장 검찰고발 기자회견
 2011. 7. 07 무서운 시민행동 2차 집행위
 2011. 7. 11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결과 발표 기자회견(약 14만 건의 허위·대리 서명 발견)
 2011. 7. 13 주민투표 서명 ‘명의도용’ 고소·고발
 2011. 7. 15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무서운 시민행동 3차 집행위
 2011. 7. 19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2011. 7. 20 주민투표 대응 논의 및 조직구성을 위한 야당, 풀뿌리시민사회 1차 전체회의
 2011. 7. 25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 수리/ 야당, 풀뿌리시민사회 2차 전체회의
 2011. 7. 28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응을 위한 풀뿌리시민사회·야당·지역단체 비상대책회의
 2011. 8. 01 주민투표발의
 2011. 8. 01 무상급식 주민투표 규탄 및 투표거부 시민운동 돌입 선포
 2011. 8. 03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규탄 각계 원로 선언 기자회견
 2011. 8. 04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나.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결성 및 발족

- 1)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은 서울시민과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대속에서 지난 8. 1. 이 사건 주민투표를 기어이 발의하였고, 이에 따라 오는 8. 24. 이 사건 주민투표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2) 그러나 이 사건 주민투표는 다음의 네 가지 점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지난 1. 18.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

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80만여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가운데 14만 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불법적인 것입니다.

3)이 사건 주민투표의 문안도 잘 못 결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1.8.1.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공고하면서 주민투표 문안을 제1안인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안과 제2안인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안 등 2개 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1안을 서울특별시 안이라 주장하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원래 소득 하위 30%의 학생에 대한 지원만을 주장했을 뿐, 단 한 번도 소득하위 50%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즉, 원래 자기 정책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이라는 2안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정책을 수정했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정책을 투표 문안으로 놓고 투표하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4) 이에 따라 이러한 위법하고 잘못된 이 사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지난 8. 4. 발족식을 갖고, 이 사건 주민투표 반대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5) 반대운동의 골자는 이 사건 주민투표가 앞서 본바와 같이 주민투표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고, 나아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대통령 선거전략의 일환에서 기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주민투표는 아예 개표가 되지 못하도록 투표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이 총 유권자 수의 1/3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1) 피고발인들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 피고발인1 및 2은 이 사건 주민투표를 위하여 서울 곳곳에 아래와 같이 '투표 하면 매년 3조원이 절약됩니다'라는 현수막들을 설치하였습니다(증 제1호 2011.8.16.

자 기사 ‘함께 걸린 상반된 현수막’).



-피고발인2 및 3 역시 이 사건 주민투표를 위하여 ‘연간 3조원, 나라살림 거덜 낸다’라는 현수막을 서울 곳곳에 설치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위 발언의 형사책임 검토

가. 주민투표법 조항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2.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제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

나. 이 사안의 경우

- 위와 같이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공히 이 사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2안을 선택하거나 전면적 무상급식이 행해지면 매년 3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설치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1안을 선택하도록 하여 이 사건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피고발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3조원이라는 수치는 서울이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교생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무상급식이 행해질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년 서울특별시 예산 695억과는(서울시 1년 예산의 0.3% 정도) 전혀 상관없는 수치이며, 무려 50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는 초등학생,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그것도 서울시 소재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투표이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가 미 실시하고 있는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을 포함하여, 교육청 예산까지를 다 합쳐서 수천억원대임(정확히는 서울시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2,410억정도, 서울시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총 1,698억 정도 소요됨. 출처 : 서울시 교육청)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시행하려는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무려 3조원이나 드는 무리한 정책’으로 호도·왜곡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투표법 제25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주민투표법 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자, 이권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오니,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약 고발이 보충조사가 필요할 경우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
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실무자인 안진걸(연락처: _____
이 출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파이낸셜뉴스 2011.8.16.자 기사

첨 부 자 료

1. 위 증거자료 각 1통
1. 위임장 1통

2011. 8. .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